

社會主義는 實現될 수 있다

林 鐘 哲*

<目次>	
I. 社會主義란 무엇인가	III. 社會主義 經濟의 基本構造
1. 定義	1. 社會主義 社會는 實在하는가
2. 社會主義와 民主主義	2. 體制理念
3.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3. 社會主義 社會 組織原理 (I)
II. 共產主義崩壞에 대한 小考	4. 社會主義 社會 組織原理 (II)
1. 誘因制度	5. 手段의 선택
2. 調整機制	IV. 結語

儂石 李海英 선생을 추모하는 강연주제로 社會主義를 택한 것은 一見하면 부적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사회주의는 진정한 모든 社會主義者들이 그 理論과 實踐을 통하여 증명한 바와 같이 愛他的 人間만이 獻身할 수 있는 理念이다. 儂石 선생만큼 남을 위해 주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 學者가 우리 주변에 매우 드문 것을 생각한다면 故人을 追慕하는 강연에서 이보다 더 적절한 主題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 社會主義란 무엇인가

1. 定義

이미 1924년에 Dan Griffin은 社會主義에 관한 서로 다른 定義를 264개나 밝혀 내었었다. 그후로도 社會主義思想은 계속 변화 발전하였으며 또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Stalin主義나 Tito主義 또는 Castro主義, 동양에서는 毛澤東主義와 金日成主義 등이 생겨 現實社會에 實在하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갈래가 생겼음을 감안한다면 사회주의에 관한 定義를 다시 수집·분류한다는 것은 費用·便益分析상 경제학자의 労苦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가한好事家나 할 수 있는 일이고 單一의 定義에 합의한다는 것도 현

* 서울대 교수, 국제 경제학과

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회주의에 관한 한 두 가지 定義를 비판적으로 소개한 다음 상당히 포괄적인, 그럼으로 해서 매우 느슨한, 내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實體에 대해서는 本論에서 다루고자 한다.

탁월한 마르크스派社會主義者인 Paul Sweezy는 「본래 生產手段私有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또 그 基礎構造와 機能樣式도 資本主義와는 다른 하나의 완전한 社會制度 또는 이를 실현하려는 運動의 總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weezy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生產手段國有化이며 이러한 특징은 그가 사회주의를 정의했던 1949년 당시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所有와 權力간 단계에 대한 研究가 더욱 깊어지고 社會主義理想實現을 위한 수단으로서 國有化가 갖는 意義나 合目的性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쌓여가면서 제 2절에서 구분하는 바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에서는 私有廢止와 이에 대신하는 國·公有化를 사회주의의 절대적 본질적 조건이라고는 보지 않게 되었다. 독일社會民主黨의 Bad-Godesbers網領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私有의 결여 또는 國有를 사회주의의 절대조건으로 할 때 사회주의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아질뿐 아니라 사회주의기본이상과도 일치되지 않으며 더욱이 우리가 사회주의를 엄격히 구별하고자 하는 또 다른 社會體制인 共產主義와 구별하기 힘들게 된다. Sweezy가 내린 정의는 1990년 이전의 共產國家 또는 주로 마르크스派일 것으로 생각되는 일부 社會主義者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Sweezy가 그의 著 「社會主義」에서 인용한 W. Graham Sumner나 James Bonar의 定義 역시 Sweezy定義에 대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간섭에 의하여 개인을 生存競爭의 어려움이나 고생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方策이나 學說」이라는 Bonar定義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累進率만 가진所得稅조차도 사회주의에 들게 된다는 이유로, 또 「민주적 정부활동에 의하여 現行制度에 비해 좀 더 적정한 富의 分配와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적정한 생산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학설」이라는 Sumner定義에 대해서는 모든 救貧法이 사회주의에 포함된다고 하여 Sweezy는 이들이 社會主義本來意味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때문에 無價値하다기 보다도 有害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Bonar나 Sumner定義는 그 모두가 사회주의를 실현시킬 主體로서

국가 또는 정부등 組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오류가 있다. 물론 F.A. Hayek에 따르면 社會民主主義는 조직이 萬能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理念이며 그 思想의 源流는 데카르트的 合理主義,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物理的인 능력」 (Physical ability to do what I want)을 自由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의 傳統에 속하는 自由主義者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선 사람들은 가장 次元높은 조직인 국가 또는 정부에 의존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慷意의 強制를 받지 않는 상태」를 自由라고 믿고 있으며 「인간행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인간적 意圖의 결과는 아닌」 (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것을 더욱 존중하는 영국적 자유주의 전통에 근거한 사람은 반드시 自由民主主義를 믿어야만 하고 따라서 社會主義者가 되어서는 안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실제로 있어서도 조직이 유일한 또는 萬能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다수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政府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실현된 사회주의어야 좀 더 공고하며 또 영속적일 수 있는 것이므로 실천주체를 좁게 한정시킨 Bonar나 Sumner 定義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훨씬 더 느슨하게 정의하여 「사회주의는 人間的 價値를 물질적 가치에 우선시키며 모든 價値를 全人類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理念體系 및 이를 실천하려는 運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社會主義와 民主主義

대다수 非마르크스派 社會主義者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마르크스파 사회주의자도 사회주의는 (議會)民主主義를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Sweezy가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와 구별하는 기준으로 議會民主主義를 신봉하는가, 스탈린政府을 民主政府로 보는가를 든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극명하게 밝혀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Oslo宣言에서 「우리들 민주사회주의자는……민주주의야말로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될 귀중한 권리라는 신념을 선언」하고 있으며 Bad-Godesberg 강령도 「사회주의는 오로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고 민주주의는 사회

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社會黨憲章도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사회민주당강령도 「사회민주당은 민주주의諸理想이 모든 사람에게 풍요롭고 의미있는 생활기회를 주게끔 모든 사회질서 및 사회구성원상호관계에 그 刻印을 남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고 오스트리아社會黨도 「사회주의자는 민주주의이념을 위하여 몸바치고 있다. 그들은 소수에 의한 독재를 受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소수를 압제하는 것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일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야말로 민주주의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란 이름앞에 또는 중간에 민주라는 낱말을 첨가하는 것은 同義反復이다. 사실 프랑스社會黨憲章은 全文을 통하여 社會民主主義 또는 民主社會主義란 용어를 쓰지 않고 사회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단지 自主管理社會主義(socialisme autogestionnaire)란 말을 몇번 쓰고 있을 뿐이다.

日本民主社會黨에서는 굳이 민주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와 구별하여 자신이 社會主義本流임을 고집하고 있지만 社會主義인터내셔널을 비롯하여 유럽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Frankurt 선언에서는 첫 主題가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이며 「사회민주주의와 文化發展」이란 대목에서는 「사회주의는……」「사회주의자는……」으로 시종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와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데 반하여 공산주의자는 社會分裂을 이용하여 共產黨獨裁를 수립코자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란 용어를 쓰는데 대하여 권리가 없다고 峻拒하는 등 명칭에 대한 집착이 강한 Bad-Godesberg 강령도 「사회민주당은 민주사회주의의 기본요구에 일치하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노력한다」거나 「社會民主主義經濟政策原理는 농업에도 해당된다」는 등 구별하지 않고 스웨덴社會民主主義강령도 「노동운동의 成就是 民主社會主義에 입각한 평화로운 사회발전이 人類解放을 위한 유일한 活力的 手段이라는 社會民主主義의 확신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社會黨강령 역시 「민주사회주의는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일 수 없다」,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했다」는 등 아

무런 구별을 앓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내세우는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同義語처럼 쓰여지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前者는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社會全般的 民主主義를 실현하겠다는 「社會」쪽을 강조하고 後者는 압제주의에 대항하여 「民主」에 力點을 두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性向은 社會主義가 갖는 真面目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는 그 理念과 實踐方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變種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Griffin이 밝혀낸 264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有效競爭개념처럼 유능하고 탁월한 社會主義指導者수 만큼 많을 수 있다. 이같은 갈래를 구분하고 밝히는 것은 社會主義理想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실천운동을 강화하고 효율화하며 「처음부터 國際的 運動으로 시작되었던」 사회주의운동의 國際的 紐帶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란 큰 흐름을 탓살派社會主義, 마르크스派社會主義, 베벨派社會主義, 케어 허디派社會主義 등 사회주의운동의 한 흐름을 主唱主導한 지도자이름을 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웨덴 社會主義, 프랑스社會主義 등 나라이름을 붙이게 하여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및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노력이……‘사회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등 갖가지 黨名으로 반영된 것은 서로 다른 傳統……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달성한다는 공통된 목적으로 결부」 되어 있는데 이처럼 傳統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초부터 태어났던 생각은 ‘사회주의’라는 개념이었다」는 1988년 社會主義인터내셔널 Stockholm흐름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3.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共產主義와 峻別되어야만 그 正體性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프랑스社會黨이 말했듯 비록 「프랑스社會主義者들은 단 한번도 그 視野를 蘇聯이나 東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와 혼동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共產主義者들이 사회주의란 용어를 속여씀으로써」 지식인들조차도 공산주의에 대하여 사회주의란 용어를 쓰는 混同이 적지 않다.

「기독교倫理, 人道主義 및 古典哲學에 근거」하는 유럽社會主義는 非마르크스派社會主義와 마르크스派社會主義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독교社會主義나 폐비언主義 또는 Bad-Godesberg大會후의 독일社會民主黨을 비롯한 유럽諸國社會主義政黨이 신봉하는 것은 非마르크스社會主義이다. 비마르크스파사회주의자중에도 마르크스理論이 有用함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들의 信必體係는 마르크스理論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마르크스파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이론이 자본주의사회의 矛盾을 해명하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真理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학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信念體係이다. 그런데 마르크스파사회주의자는 목적달성을 위해 暴力を 受容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데 따라 共產主義者와 단순한 마르크스파사회주의자로 구별된다.

이런 구별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共產黨宣言이래 Marx는 暴力에 의한 資本主義顛覆을 배제하지 아니하였고 正統을 자처하는 教條의 마르크스주의자는 모두 폭력을 공정하고 또 議會民主主義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을 공산주의자와 구별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은 Paul Sweezy나 Leo Huberman같은 마르크스派社會主義者까지도 이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暴力을 공정하는 마르크스派社會主義者에 대하여 社會主義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共產主義者라고 부르고자 하는데는 역사적, 현실적 근거가 있다. 우선 그始祖인 Karl Marx가 1846년 Brussel에서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시 1847년에는 Brussel에서 결성한 組織이름을 共產主義者同盟이라고 하였고 그 이듬해 발표한 강령을 共產黨宣言이라고 이름붙였으며 궁극적인 理想社會를 共產主義라고 命名하였다.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者들은 暴力主義를 믿는 마르크스派社會主義를 共產主義라고 불러 이를 자신과 구별하고 있다. Bad-Godesberg강령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社會主義傳統에 호소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Oslo宣言에서는 「공산주의국가에서는 社會主義政黨活動이 계속 금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1980년 프랑스社會黨憲章은 「프랑스社會主義는 蘇聯을 결코 사회주의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회주의란 명칭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스웨덴社會民主黨綱領은 「공산당이 오래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는……민주사회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고 하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峻別하고 있다.

물론 非마르크스派社會主義중에도 폭력을 신봉하는 流派가 과거나 현재 없었던 것은 아니다. 廣義의 사회주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쌍디깔리즘이나 無政府主義같은 反資本主義理念體系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나는 사회주의가 다음과 같은 흐름은 포섭하고 그밖의 것은 배제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어떤 사상체계에 근거하였건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友愛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그 목적 달성을 위한 非民主的, 暴力的 手段使用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들만이 진정한 사회주의자이다. 둘째 폭력을 용인하는 流派는 그것이 마르크스主義에 근거한 것이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暴力主義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이 같은 구분에서 自明해지므로 더 부연할 필요도 없겠으나 나는 社會主義를 공산주의로 가는 過渡期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자의 用語例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반대한다. 「각자 능력껏 노동하되」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노동에 의해 분배」 (to each according to his labor)하는 단계를 사회주의, 「필요에 따라 소비」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하는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마르크스적 共產主義傳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社會主義를 위해서는 대단한 오해와 혼동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前後 두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社會主義란 말대신 공산주의제 1 단계 (first of communism)와 공산주의제 2 단계 (second phase of communism)으로 또는 초기공산주의 (early communism)와 공산주의로 이름짓는 것이 마땅하다.

Ⅱ. 共產主義崩壞에 대한 小考

蘇聯과 東유럽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한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순수히 경제적인 두가지 원인에 국한시켜 고찰한다.

1. 誘因制度

경제행위를 유발하는데는 物質的 誘因과 道德的 誘因이 있고 물질적 유인은 다시 否定的 誘因인 強制(compulsion)와 肯定的 誘因인 貨幣報酬(precu-

niary reward)로 나누인다. 어느 사회든 이들 세誘因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그중 어떤 것이 지배적이나 하는데 따라 사회체계는 威迫體系(threat system), 交換體系(exchange system) 및 統合體系(integrative system)로 구분된다.

협박체계에서는 강제가 지배한다. 일하는 사람뒤에 둥둥이를 든 사람이 있어 「만일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혼을 내주겠다」(If you do not do something good for me I will do something bad to you)고 협박하여 일을 강제하는 사회이다. 협박체계는 適法性(legitimacy)을 갖지 못할 경우 「내게 못된 짓을 한다면 너도 당할 줄 알아라」(If you do bad to me I will do bad to you)라는 대항적인 협박체계를 유발하므로 오래 持續될 수 없다. Vietnam에서 미국이, Afganistan에서 소련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을 갖고 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때문이다.

협박체계가 부정적인 물질적 유인에 근거한 負財(bads)교환인데 반하여 교환체계는 正財(goods) 교환을 토대로 한다. 일하는 사람앞에 돈가진 사람이 서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준다면 네게도 좋은 일을 해주겠다」(If you do something good for me I will do something good to you)는 것이 교환체계이다. 교환체계는 반드시 等價交換을 전제한다. 交易條件이 한쪽에 유리하고 다른 쪽에 불리한 不等價交換은 강제가 없을 경우는 後者가 거부하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부등가교환으로도 재화가 주인(hand)과 장소를 바꾸기는 하지만 그 교환은 불이익을 보는 한 當事者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強制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협박체계현상이지 교환체계현상은 아니다. 이처럼 등가교환은 반드시 대등한 세력관계에서만 성립되므로 교환체계는 반드시 평등한 인간관계위에서만 성립된다.

統合體系는 지위, 同一視, 사랑, 미움, 선의, 악의, 적법성 등 道德的誘因에 기초하며 「각자가 자기 처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각자에게 알맞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I do things because of what I am and you do that because of what you are, that is, because of some kind of status or love) 사회이다.

時代와 場所에 따라, 즉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이중 한 誘因이 지배적이고 다른 것이 종속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體系이든 나머지 두 誘因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 협박체계였던 前資本主義社會에서도 가정, 교회같은 통합체계, 商人社會같은 교환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형적 교환

체계인 자본주의사회도 租稅부문같은 협박체계를 갖고 있다. 또 통합체계라는 교회도 地獄苦라는 협박을 일상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中・蘇分裂이 보여주듯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한 統合體系」라고 Kenneth Boulding이 말했듯 공산주의는 私的 利害보다는 공공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고 우선시키는 사회처럼 생각되고 또 당자들에 의해 그렇게 주장되었다.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공산주의 기본법칙도 이를 말하는 것이며 Fidel Castro가 Cuba에서 전개한 新人間 (New Man) 운동도 자본주의社会의 利己的 인간과는 다른 愛他的 인간 즉 統合體系의 人間을 창조하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사회는 愛他的 人間으로 구성되는 통합체계라고 믿는다. Cläre Tisch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기적, 개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Eduard Heimann도 「진정한 사회주의는 기본적 협력을 토대로 할 때만 가능하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근거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

人性은 善, 惡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原始共同體社會가 통합체계사회였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人類學은 제시해주고 있다. 牧畜・農耕이 시작되면서 私有財產制度가 생기자, Adam Smith표현을 빌리자면 토지가 私的으로 점유되고 자본이 축적되자 道德的誘因은 후퇴하고 물질적 유인이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Marx의 時代區分에 따를 때 奴隸制社會와 封建制社會에서는 強制라는 부정적 유인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윤이라는 긍정적 유인이 지배적인 動機로 작용하였는데 그 기간은 대략 1만년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1만년 역사를 통하여 제 2의 人性으로 뿌리내린 物質的誘因과 그 결과인 私的所有를 Stalin은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도덕적 유인으로 이를 대신하려 하였다. 물질적 유인은 부르조아적 弊害로 부정되고 생산수단 私有는 전폐되었고 생산수단이 아닌 것도 市民的 所有로 크게 제한되었다. 물론 共產主義型人間類型을 만들기 위하여 2세대에 걸친 조직적 노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1만년가까이 계속된 습성이 70년의 교육으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다. 또 人性은 個體的으로는 교육・노력을 통하여 바뀌어 질 수 있지만 한 社會나 人類등 總體的으로는 인간이라는 主體的 條件이외에도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그相互作用에 크게 영향받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 모두가 蘇聯社會에서는 불리하였다.

자연조건을 보면 蘇聯은 광대한 토지와 비교적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稀少性에 제약받지 않을 만큼 자연/인간관계가 풍요로운 것은 아니다. 自然是 Gauguin시대의 Tahiti섬이나 지금의 Kuwait와는 달리 필요에 따라 소비할 수 있을만큼 너그럽지는 않다. 그러기에 蘇聯에서는 자연을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계속 개발할 수 있었을 동안, 즉 外延的成長要素를 遞增的으로 투입할 수 있었던 1930~50년 간에는 공산주의가 그런대로 효율적으로 기능하였지만 외연적 성장요소가 한계에 이른 50년대 이후에는 그 효율은 급속히 저하되고 爰他心은 미처 물질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利己心에 의한 강한 排戰을 받게 되었다.

불리한 자연/인간관계는 기술진보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것이어서 Stalin도 「고도한 기술에 입각한 社會主義生產의 끊임없는 증대와 개선을 통하여」 利己心의 발동을 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진보는 그過半이 作業場의 필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발명은 국가기관 또는 민간연구소에서 방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되는 기술과는 달리 個人的利得과 관련지워질 때 活性化될 수 있다. J. Schumpeter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 新結合은 바로 이같은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며 자본주의가 定型化됨으로써 서서히 사회주의로 전환한다는 그의 理論도 한 사람의 天才가 아니라 수많은 凡人이 방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빌어 기술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體制에 크나큰 含蓄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도 물질적 보수가 아직은 가장 강력한 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없애버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방대한 연구개발비용이 지출된 國策部門 특히 軍需產業部門에서는 先進資本主義國家를 때로는 앞지르는 수준까지 기술이 진보되었지만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소비재 생산부문에서는 投資優先順位에 뒤진데 이어 기술혁신까지도 보잘 것 없어 결국 공산주의 경제를 파탄시키게 되었다.

社會的 條件도 蘇聯에서는 물질적 유인을 전폐하기에는 불리하였다. Marx 이론대로 공산주의 혁명이 가장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났거나 러시아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蘇聯만이 一國社會主義路線을 걷지 않고 혁

명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어 모든 사회가 공산화하였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後進資本主義國家인 러시아만이 먼저 공산화하여 물질적 유인이 작용하고 있는 생활수준 높은 자본주의사회와 體制生存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붕괴요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道德的 誘因을 假裝한 강제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기능하던 30년대 후반에도 Stakhanov운동 참가자에 대한 높은 보수등에서 보듯 貨幣利得이란 물질적 유인을 전폐할 수 없었던 蘇聯공산주의는 도덕적 유인의 假面이 벗겨짐에 따라 強制의 효율이 저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主義上 물질적 유인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없었고 오히려 強制勞動等 노골적인 협박에 더욱 더 의존해갔다. 그 결과 상부에서 내린 指示에만 충실하고 또 그 범위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특이한 人間類型 소위 소비에트型經濟人 homo economicus Sovie-ticus을 탄생시킨 채 動機賦與에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자본주의가 그 體制를 擔持해 나갈 수 있는 人間蟲型인 소위 經濟人 homo economicus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과는 반대로 70년의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주의는 그 擔持勢力이어야 할 愛他人 창출에 실패하였다.

非 Stalin化와 특히 利潤概念導入은 통합체제라는 假裝아래 강제한 협박체계를 타파하고 교환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다수국민을 위한 주요 動機인 物質的 誘因은 소위 「사회주의경제개혁」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같은 개혁은 한편으로는 물질적 유인으로 전면복귀하기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黨 등 公式組織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教條的 共產主義者들, 볼셰비키革命후 蘇聯社會가 도덕적 유인에 의하여 움직여져 왔다고 오해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理想主義者들의 저항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保革對立이 오래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은 전체적으로 停滯되고 부분적으로는 畸形化되어 지금과 같은 붕괴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調整機制

한 社會가 일상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수많은 經濟問題를 解決해 주는 調整機制에는 傳統, 市場, 命令 세가지가 있다.

전통은 經濟主體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이 일반적으로 公認된 관습의 틀

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親族같이 均質的 集團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조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機制이다.

市場은 무수한 공급자와 무수한 수요자가 서로 홍경하는 가운데 특정한 개인과는 관계없이 impersonal하게 형성된 가격(bargained price)에 의하여 조정되는 機制이다. 조정기제로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분산된 경제주체에 의한 자유로운 상품처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利益의 質이 같은 原子的 個人과 財產的 活動을 할 수 있는 所有가 전제된다.

둘째 自由意思의 合致인 계약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려면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와 언제든지 서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제조건이 전제된다.

세째 give and take 원리에 의한 계약당사자간의 利益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가격은 완전한 伸縮性과 彈力性을 가짐으로써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동질적 상품을 중심으로 分化된 수많은 부분시장은 가격을 통하여 單一市場體制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명령은 자동적이며 특정한 개인과는 관계없는 市場機制와는 달리 意圖의이며 특정한 개인에서 비롯된 指示에 의하여 조정되는 機制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여 얼마에 팔 것인가 하는 생산에 관한 결정은 물론 과거 Stalin體制下의, 그리고 현재 金日成體制下의 공산주의는 消費選擇과 職業選擇 및 家計資源 處分까지도 중앙당국命令에 의하여 조정하였다. 전통이 균질적 집단(symmetrical group)을, 시장이 자동조절기능을 갖는 시장조직(a system of self-regulating markets)을 불가결한 조건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령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조직인 官僚組織(bureaucracy)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전통은 생산적 및 規制的 事務가 모두 法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집단, 신분 계급 및 개인에게 할당되었던 慣習社會(customary or status society)에 지배했던 조정기제로 所有的 市場社會(posessive market society)인 현대사회에서는 그 담당분야는 매우 작아져서 시장과 명령이 代案的 調整機制로서 擇一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특정한 개인과는 관계없어야 하고

명령은 특정개인과 절대로 무관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二律背反의이다. 시장에 의한 조정이 확대되면 명령에 의한 조정은 필연적으로 축소되고 명령에 의한 조정이 확대되면 시장에 의한 조정은 그 만큼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二律背反관계에 있는 시장과 명령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나 하는 데 대한 절대적 기준은 마련하기 어렵다. 경제주체나 객체가 갖는 성격이組織을 거부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조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이 명령보다 효율적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명령이 시장보다 다 효율적이다. 자연히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한 경제에서는 명령이 더 효율적이고 규모가 크고 구조도 복잡한 경제에서는 시장이 명령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또 토지, 자본, 노동력 등 外延的 成長要素가 풍부하여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명령이 더 효율적이고 外延的 成長要素供給이 비탄력화하여 기술, 조직 등을 이용한 內包的 成長戰略을 채택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명령은 비효율화하고 시장에 의한 조정이 요청된다. 封建社會에서 資本主義社會로 경제가 성장, 발전하였을 때 調整機制가 命令에서 市場으로 바뀐 것은 擇一의 두 調整機制가 갖고 있는 屬性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시장에 의한 조정을 전면거부하고 명령에 의한 조정을 택한데서도 비롯된다. 명령을 유일한 조정기제로 택한데는 그럴만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은 誘因制度와 관련하여 도덕적 유인이라는 假面아래 전개된 強制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補完裝置이다. 둘째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함으로써 資本財市場을 폐지하였고 따라서 조정기제로서의 시장이 그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市場體制를 잃게 되었다. 물론 Ludwig von Mises가 축발한 社會主義經濟計算論爭을 통하여 生產手段市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調整機制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20년대에도 주장되었고 30년대에는 Mises 등 일부학자를 빼놓은 대다수 경제학자에게는 定說로 인정되었지만 蘇聯공산주의가 시장을 거부하기 시작하였을 때만 해도 確信을 줄 수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다. 세째로 비록 제 1 차대전 당시 러시아가 세계 제 5 위의 공업생산력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대도시를 중심한 近代化部門(modern sector)을 제외한 전통부문(traditional sector)은 매우 後進의였고 傳統과 命令에 의하여 조정되는 부분이 커졌다. 네째로 대工業를 중심한 근대화부문은 조직이 용이하고 또 조직순응적이었으므로 시장을 근대화부문에서 명령으로代替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끝

으로 적어도 1940년대 말까지는 토지, 노동력 등 외연적 성장요소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었고 전체적인 경제 발전 단계로 技術의 지배가 절대적인 수준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소련경제를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시장과 명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시장을 버리고 명령을 택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해야 한다.

문제는 명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버렸다는데 있다. 사실 모든 경제 사회에서 전통, 시장, 명령이라는 세 가지 조정 기제는 범위가 넓고 좁다는 차이는 있지만 각기 다른 조정 기제보다는 유능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필요성은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人間性 本然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理想的으로 생각할 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부문은 시장에게 맡기고 시장이 실패하는 부문만 명령에 의하여 조정하는 二元的 調整機制를 수립하였더라면 공산주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시장을 너무 오래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를 통하여 명령에 의한 조정은 소련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5개년 계획의 잇다른 성공은 때마침 大恐慌에 시달리던 資本主義 社會와 對比되어 蘇聯式 (즉 명령에 의한) 國民經濟管理가 지극히 우월함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優位, 적어도 시장에 대한 非劣位는 1940년대 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蘇聯에서는 外延的 成長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그와 동시에 명령은 그 效率이 급속히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逆機能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시작된 「共產主義經濟改革」 당시 단순한 分權化나 利潤概念導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축소하고 시장을 조직적으로 확대하였더라면 그 개혁은 성공하였을 것이다.

세째로 결정권이 과도히 집중된 것도 공산주의가 실패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명령은 특정한 개인이 하는 것이며 명령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직의 最上層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수많은 부분시장, 수많은 지역경제로 이루어진 국민경제를 조정할 권한을 官僚組織의 頂上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分權的 決定을 통한 限定된 命令 역시 조정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극단적인 것이 모든 결정권을 個個人에게 나누어 준 시장경제 체제이다). 최고 결정권자는 수많은 分權的 決定을 조정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나 民主的 權力集中(democratic centralization)을 조직의 기본원리로 삼은 蘇聯共產主義는 처음부터 黨政治局에 명령권을 집중하였다. Lenin 生存時에는 그런대로 下意上達機能도 하여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의 價格 못지 않게 情報傳達媒體로서 기능하던 蘇聯官僚組織은 Stalin體制에서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충분하게 전달하고 다시 feedback하는 차널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는 그 信賴性을 잃고 정보·통계를 믿지 못하게 된 최고결정권자는 客觀的 事實이 아닌 자신의 主觀, 偏見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게 됨으로써 전체로서의 官僚組織은 합리적 명령을 창출하는 조직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民主的 集權化에 기초한 官僚組織은 집중된 권력이 非民主化되는데 따라 그 生產性이 떨어져 끝내는 그 維持費用을 밀들게 됨으로써 蘇聯經濟는 와해된 것이다.

1957년 分權化에서 시작하여 1965년에 있었던 利潤概念公認, 1967년의 生產財價格改編, 1969~70년에 추진된 集團農場을 중심한 市場의 확대 등 Kosygin改革에 이르기까지의 개혁은 진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뒤이은 Brezhnev反動에 의하여 공산주의는 그 경제를 연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Gorbachev登場은 공산주의를 연장시킬 수 있는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도 늦었던 것이다.

III. 社會主義經濟의 基本構造

1. 社會主義社會는 實在하는가

사회주의사회는 實在하는가. 엄격한 의미에 있어 아직 실재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半世紀이상 사회주의정책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자본주의사회조직을 改造하여 왔던 스웨덴에서도 資本과 자본가는 여전히支配權을 잃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정당이 정권을 상실한 영국, 독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집권하고 있는 프랑스, 새로이 권력을 장악한 스페인에서는 資本의 힘은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실패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실패한 것은 蘇聯, 東유럽共產主義이고 실패一步前에 있는 것이 北韓, 쿠바共產主義이며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베트남, 캄보디아共產主義이다. 오직 中國 한곳에서만 共產主義는 健在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중국共產主義가 전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共產主義經濟體制 즉 제 2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진 소비에트型經濟(Soviet-type economy)에서 일찍부터, 또 상당정도까지 벗어났다는데 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인 中國經濟體制改革이 말해주듯 中國共產主義의 장래는 그것이 經濟體制的 特徵면에서 보아 얼마만큼 非共產化할 수 있느냐, 바꾸어 말하여 言語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社會主義로 얼마만큼 접근하느냐, 또 얼마만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이는 한번은 大躍進運動 또 한번은 文化大革命이란 이름으로 Stalin體制를 그대로 중국에 移植하려던 노력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면서 중국경제를 破綻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 그리고 破局은 誘因과 調整機制 및 生產上優先順位등 면에서 非공산주의要素를 대량도입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도 증명될 수 있다. 더우기 중국경제는 벌써부터 外延的 成長要素供給이 비탄력화해가고 있어 더이상 소비에트型經濟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專뿐아니라 紅에 의해서도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도처에서 붕괴된 것은 소비에트型共產主義經濟이고 변질되어가는 것은 Stalin型共產主義와 그 亞流이다.

붕괴된 공산주의사회는 자본주의로 복귀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도 분명 부정적이다. 이미 1956년에 John Strachey는 소수의 거대한 經濟主體로 구성된 現代資本主義는 ① 경쟁형태변화, ② 대내적 불균등발전, ③ 대외적 불균등발전, ④ 국가와의 結託, ⑤ 기술진보 및 자본축적의 형태변화, ⑥ 소유와 경영분리, ⑦ 統制可能性 등 純正한 자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불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같은 특징을 갖는 현대자본주의는 資本主義最後段階(the last stage of capitalism)라고 부르는 것이 좋으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변화한다면 그 이후는 資本主義體制의 제 3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분명히 날말의 誤用인 단계가 온다고 주장했었다. Strachey 이후에도 歐美資本主義는 한편으로는 무수한 原子的 個人으로 구성되었던 純正한 자본주의와는 용납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資本家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理念과 社會組織 양면에서 자본주의를 止揚시키려는 社會主義者들의 노력이 열매맺어 더욱 크게 변질되었다. 지금의 유럽社會를 자본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본주의란 개념 그 자체를 「자본주의란 生產手段所有者로서 命令權을 가진 자본가와 無所有의 經濟客體인 노동자가 市場이라 機構를 매개로 협동하는 流通經濟

組織」이라고 한 Werner Sombart의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명칭보다는 차라리 社會主義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것임이 분명하다.

資本主義의 總本山임을 自他가 공인하는 미국사회 역시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미 1948년에 저명한 Harvard대학 經濟學 교수인 Sumner Slichter는 자본주의 排他的 決定權이 정부와 특히 勞動에 의하여 크게 제한되는 것을 이유로 ‘미국은 勞動主義社會(laboristic society)로 변하고 있는가’라는 問題提起를 하였고 그후 노동주의 사회는 지나친 말이고 미국은 분명 福祉國家가 아니므로 混合經濟體制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자본주의란 명칭을 留保하였다. 근자에 와서도 Milton Friedman 등이 토로하는 불만 등을 볼 때 미국자본주의는 경제이론이나 教條的 資本主義者를 만족시켜줄 수 없을만큼 변질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대자본주의 못지 않게 거대한 단위로 구성된 공산주의경제가 Stalin 體制的 諸要素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자본주의란 港口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수정·변질되는 상황속에서 社會主義는 오히려 그만큼 더 그 基盤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서는 M. Thatcher의, 미국에서는 Reagan-Bush에 의한 反動이 있었고 그밖의 나라에서도 福祉政策이 一進一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고 B. Jessop 등은 西유럽에서 古典的 社會主義가 퇴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회주의는 조직 특히 정부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사회주의자에게는 정권상실이 그대로 사회주의의 실패 또는 일시적 정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政權権力이 목적실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한 수단임은 인정하지만 그보다는 個個人의 노력과 國際的 連帶를 강조하고 있다. 허다한 歷史例에서 보듯 社會主義理想中 일부는 보수주의자에 의해서도 실현되었으며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자기이상이 반드시 제손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80년대를 전후하여 있었던 영국 독일에서의 사회주의정당失脚 또는 최근 있었던 스웨덴社民黨內閣失權을 사회주의가 후퇴하거나 潛落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보장계획이 축소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주의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이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완벽한 社會保險制度를 가지고 있던 Bismarck의 독일을 결코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사회주의는 힘의 慷意的行使를 假裝 또는 正當化하기 위하여 또는 경제권력의 慷意的行使가 빚은 폐해를 뒤치락거리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福祉主義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계획이 없는, 복지정책이 극소화된 복지사회야말로 사회주의가 진실하고자 하는 사회인 것이다.

國有化를 포기한 것을 사회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 사회주의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비롯한 모든 힘을 완전히 또 영구히 慷意의으로는 행사할 수 없게 하려는 이상을 말한다. 한때 힘은 財產所有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생산수단국유화가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사회주의정책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었다. 蘇聯에서 생산수단을 전면적으로 국유화한 것이나 戰後 영국에서 노동당정부가 부분적 국유화를 단행한 것은 그 현저한 예이다. 그러나 權力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또 蘇聯社會의 실태가 밝혀진 지금 재산소유가 힘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Marx的 主張을 믿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중에서도 많지 않다. 財產所有이외에도 政府, 組織上位置, 情報흐름支配, 科學·技術上의 專門知識, 군대 기타 暴力裝置支配, 다수인이 가진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권위, 이데올로기的 象徵操作能力, 순전한 개인적 資質도 힘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모든 權力源泉이 경제적으로는 소득과 富를 그 소유자에 가져다준다.

그리므로 國有化를 포기한 것은 결코 사회주의가 폐배했다거나 후퇴했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유화를 포기함으로써 사회주의는 個人手中으로 집중되는 것 못지 않게 위험한 國家로의 權力集中을 막고 그럼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권력을 평준화하고 偏重된 권력이 慷意의으로 발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노동당정부에 의한 國有化는 權力의 본질에 대한 理解不足에서 생긴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Francois Mitterand을 제외한 유럽社會主義者들이 국유화를 포기한 것은 혁명한 결정이다. 재산소유가 힘의 유일한 원천이 아님이 분명해진 이상

「모든 경제력집중은 비록 국가수중으로의 집중이라고 하더라도 그자체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生產手段私有는 공정한 社會秩序건설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權利」(Bad-Godesberg 강령)를 갖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현명한 일이다.

유럽에서 社會主義는 정부를 장악했을 때도 있었고 없었을 때도 있었다. 또 信奉되고 採用되었던 수단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회주의는 성장·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미 어떤 세력도 「빈곤이 어리석고 게으른데 대한 당연한 처벌」(poverty is the natural punishment to the folly and idleness)이라는 주장을 明示的으로 제기할 수는 없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적어졌다.

이제는 어떠한 保守主義者도 자본주의를 Sombart定義가 들어맞던 1세기 전으로 되돌리려 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정권을 놓쳤다고는 하지만 영국에서는 二元的 參與樣式(two-tiered pattern)에 의한 產業民主主義가, 독일에서는 經營組織法 또는 新共同決定法에 의한 경영참여가, 스웨덴에서도 共同決定法에 의한 또는 勞動市場會議(Labor Market Board)를 통한 공동결정이 資本의 專制를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물론 資本家支配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B. Horvat 주장대로 영국경제는 대략 1천의 집안(families)에 의하여, 미국경제는 Victor Perlo분석대로 8大資本集團에 의해, 또 日本經濟가 6대재벌그룹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대략 50개그룹 1천미만家口에 의해 富는 70%이상, 소득은 50%이상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金權寡頭支配는 비록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1세기전 또는 1세대전에 비하여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자본가는 保身을 위하여 사회주의자는 士氣振作을 위하여 자본의 힘이 크게 약화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金權寡頭支配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자본의 힘이 Sombart시대에 비해서는 Slichter시대에 더 약화되었고 Slichter 당시보다는 지금 勞動의 힘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더 강해졌다. 이 모든 성취가 사회주의자에 의한 것만은 아니나 사회주의는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유, 평등, 인류애가 실현 가능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이 증가하는 속에, 느리기는 하지만 없는 자에게 계속 유리하게 변화하는 사회세력관계 속에, 비단 社會保障制度뿐만 아니라 힘의 불균등이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폐단을 없애거나 극소화

하고자 하는 制度裝置속에서 사회주의는 實在하며 성장하며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2. 體制理念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럿이 있다. 프랑스大革命 당시 自由, 平等, 友愛란 세 價值가 明示的으로 표명된 이래 이 조건에 대한 연구는 深度있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Harold Lasswell은 권력, 존경, 애정, 공정과 복지, 富, 開明, 기술 등 두 종류 여덟개 價值와 필연적 구성 요소로서 이들 8개 價值와 함께 껴묻혀 있는 것으로서 自由를 제시했다. 한편 Gregory Grossman은 體制成果判斷基準으로 풍요, 성장, 안정, 保障, 효율, 형평과 정의, 자유, 주권, 환경보전을 또 Sweden 社會主義黨은 自由,平等, 기회균등, 平和安全, 安心感, 連帶·協同, 公正간음 여덟 가지를 들었다. 이들 가치는 人間性本然을 실현시키는데 모두 불가결한 것이나 과거에는 인간의 知的, 육체적 미발달, 如意치 않은 환경조건 등 탓으로 어느 社會體制이든 그중 하나 정도만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나머지는 代償으로서 희생시켰거나 無爲而化에 내맡겼었다.

예컨대, 重商主義시대에는 풍요가 절대시되었다. 廣域經濟에 기초한 국민 국가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대와 유능하고 충직한 官僚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財政收入增大가 불가결하였다. 貨幣形態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려면 金銀鑄을 개발하거나 「금은광이 없는 나라에서는 征服이나 貿易이외에는 길이 없었다」. 絶對君主는 「이웃나라보다도 더 많은 金銀을 가져야 했으므로」 貿易差額을 통해 금은을 보다 많이 축적하고자 하게 되고 그러려면 輸出財를 생산하는 제조법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길밖에 없었다. 增產→輸出→差額인 금은축적을 통한 豐饒가 일관된 중상주의 목표였고 그 수단으로서 국가간섭은 통한 商工業육성과 최대한의 自給自足이 추진되었다.

生產力基盤이 취약했을 때 保護·干渉을 받아들였던 경제는 그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숙달된 정책 간섭」(skilful hand)의 逆機能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사회는 규제를 통한 풍요대신 自由가 필요해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제약을 가하는 온갖 불평등한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自然的 自由體系가 저절로 성립된다. 사람들이 正義의 법을 유린하지 않는 한도안에서 자기資本 및 勞動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계층사람과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自由만 주어지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인도되어 私利追求는 그것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인 公益도 증진」시키게 되고 생산력이 높아져 아무리 하찮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만인 酷長보다 월등히 많은 富를 갖게 되므로 弱者 救濟를 위한 경제정책은 필요없다는 Adam Smith 理論을 토대로 自由는 資本主義體制理念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게 되었다.

자유만 확립되면 「가능한 모든 體制中 가장 좋은 體制(인 자본주의사회)에서 萬事는 最善을 지향한다」 (All is for the best in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는 樂觀은 大恐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자본주의는 「만성적 불황에 빠질 天性的 경향이 있고 그 本質도 고도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기능케만 한다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더 좋고」「사람들이 얼마나 분별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참고 견딜 수 있는」體制라고 판단한 J.M. Keynes가 자본주의를 공황에서 구제할 경제정책수단으로 고안 해낸 것이 정부에 의한 總需要管理였다. 자유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不安定을 없애기 위하여 Keynes는 「순수한 私企業 體制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가간섭」 즉 보이는 손(visible hand)에 의한 조정을 용인하였다. 安定을 위하여 自由는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회생되었고 그결과 「官僚라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공공사업이라는 (정부가 지급하는)丸薬을 먹어야만 延命할 수 있는」 規制資本主義로 放任的 資本主義는 변질했다. 戰後資本主義社會가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하여 雇傭, 物價, 國際收支安定 등을 生產效率보다는 우선시키고 있음은 K. Kirschen 등에 의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共產主義體制理念은 많은 사람들이 平等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본래 평등한 능력을 가진 人間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지배적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다는 물질적 조직을 토대로 無所有인 피지배계급을 수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J. Wilczynski가 명쾌히 해석했듯 생산수단의 私的 所有를 완전히 폐지한 공산주의사회에서는 體制的 長點에 의하여 평등은 자동적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할 수 있을만큼, V. Lenin 표

현을 빌리면 「황금은 공중변소바닥을 까는데 쓰일 만큼」 풍요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 課題로 등장한다. 이점은 「생산을 무한히 증대·개선시킴으로써 계속 늘어나는 사회전체의 물질적 욕망과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보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이 갖는 특징과 요구라고 J. Stalin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처럼 限界效用이 제로인 경제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세기에 걸쳐 남을 위한 노동, 수탈자를 위해 강제된 노동이 행하여져 왔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 더구나 최신기술과 문화의 모든 成果에 의지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노동생산성이 끊임없이 상승한다는 경제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둘째 진정한 科學인 마르크스이론에 의하여 사회발전의 기본법칙이 발견되고 그 법칙에 근거하여 사회를 계획적으로 움직여 나가면 發展效率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결과 「생산력과 사회적 노동생산성이 엄청나게 증대하는 것을 토대로 남아넘칠만큼 풍부한 소비물자가 만들어 지게 되어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공산주의원칙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蘇聯이 高度成長을 至上課題로 삼은 것은 그 體制理念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며 단순히 資本主義社會를 따라잡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社會主義體制理念은 자유, 평등, 人類愛(fellowship, fraternity, brotherhood, solidarity)라는 3位1體的 價值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주의인터내셔널 Frankfurt 선언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인간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나 社會主義者同盟이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자유, 평등, 인류애」라고 한 것은 그 대표적인 견해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유, 평등, 인류애를 3位1체적인, 不可分의 하나로 주장하는 근거는 이들 相互關係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있다. 사회주의자들 생각으로는 자유, 평등, 인류애는 독립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치이다. 모든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똑같이 자유로워야 한다. 내 자유가 남의 자유와, 또 남의 자유가 내 자유와 양립할 수 있으려면 내 자유에 의해 남의 자유가, 남의 자유에 의해 내 자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각자의 자유가 갖고 있는 힘이 똑같을 때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유(equal freedom)를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평등은 반드시 자유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의 자유를 그만큼 박탈한 것이 된다. 또 권리가 적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유를 유지·보존할 능력이 적고 따라서 그만큼 자유를 누릴 힘이 없다는 것이 된다. 진정한 평등은 자유로운 평등(free equality)이어야 한다. 결국 평등한 자유는 자유로운 평등을 의미한다.

인류애는 자유·평등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一體性, 고도한 보완성을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사실 인류애가 없으면서도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런 사회를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부족함에 시달리는 인간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신장하고 자기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의 자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생기기 쉽다. 그럴경우 각자의 능력이 결코 동일할 수 없는 인간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파괴되고 壓制와 불평등이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류애는 자유와 평등을 永續케 해주는 것이며 자유와 평등은 인류애를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회주의인터내셔널 Oslo선언에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등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며 이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자유, 평등은 同胞愛란 이념을 떠받치는 두개의 기둥이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脈絡에서인 것이며 이같은 정신은 사회주의인터내셔널 Stockholm선언에서도 「민주사회주의는 자유, 사회정의, 연대를 지향하는 국제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일관되고 있다.

3. 社會主義社會組織原理 (I)

인간은 무한한 다양성을 갖는 존재이므로 人間性本然의 실현을 목적하는 社會主義社會는 여러 部門에서 적어도 二元的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다.

(1) 誘因制度

물질적 유인과 도덕적 유인 모두가 활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 移行하는 오랜 사회주의건설기간중 처음에는 물질적 유인이 지배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도덕적 유인은 副次的, 보완적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強制에서 貨幣利得으로 크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물

질적 유인에 의하여 주로 動機지어졌던 1만년가까운 세월동안 누적되어온 영향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는 없다는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洞察과 소련공산주의 75년의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근거한 주장이다. 사회주의건설기간중 우리는 두가지 방법을 통하여 愛他的 人間類型創出에 노력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넓은 뜻의 교육을 통하여 人性을 陶冶하는 길이다. 인간욕망은 처음에는 衣, 食, 住등 물질적 요구를, 다음에는 歸屬感등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나타났다가 인격이 원숙해지는 나중단계에는 愛他心, 正義등 도덕적 요구로 승화한다는 것이 Abracham Maslow의 心理發展段階說이다. 이 이론이 옳다면 우리는 교육을 통한 品性陶冶에 의해서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自己實現을 하도록 助長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산을 증대시켜 財貨의 한계효용을 계속 零에 접근시킨다는 길이다. 「창고가 가득해지면 예절을 알고 衣食이 풍족해지면 榮辱을 안다」(倉凜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귀절이 말해주듯 공급이 계속 증대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커져 재화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게 되면 자연히 물질적 유인도 그 한계효용이 작아질 것이다. 물론 물질적 생산력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즉 자연적, 기술적 제약을 받게 마련이므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存在이므로 욕망은 아무런 제약없이 발생·증대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의 한계효용이 零이 되는 사회는 공급이라는 變數에만 의존할 때는 절대로 도래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하여 모든 욕망이 愛他的으로 적절히 규제·조정될 稀少性이라는 제약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도덕적 유인이 주가 되고 물질적 유인은 부차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도덕적 유인이 지배적인 동기가 되려면 사회구성원간의 同質性이 매우 커져야 한다. 동질성은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的 平準化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지만 意思決定單位를 작게 함으로써 즉 關心의 내용이 공통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共同體를 의사결정단위화함으로써도 촉진될 수 있다. 이익의 질이 같은 공동체로 分權, 自治케 한다는 것도 공산주의와는 正反對되는 사회주의의 기본특징이다.

(2) 所 有

소유 역시 二元的으로 대처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생산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私有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주의 기본원칙이어야 한다. 노동 생산물이 아닌 自然資本(natural capital) 즉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大氣資源 등은 人間生存 및 활동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일뿐 아니라 그 공급이 일정하여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을뿐더러 특히 지하자원은再生이 불가능한 枯竭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自然資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 변형할 권리 및 그 이용에서 생긴 과실을享有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그 價值를 처음수준보다 감소시켜서는 안될 의무를 지워야 한다.

자연자원에 대하여 私有를 인정하지 않을 때 代案은 國有와 公有가 있다. 국유는 「어떤 사람이 국유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는가를 국가가 결정함에 있어 公認된 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特定人の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은 定義로 미루어보나 또는 이같은 정의에 따랐던 소련사회의 경험으로 보나 국유는 사회주의 소유제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公有는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나 私個人이 공유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간섭하는 권리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주의 소유형태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다. 더구나 「私法의 여러 규정을 갖고 검증할 때 公有財產은 결국에는 개인적 권리의 集計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므로 私有制로부터 私行하는데는 마찰이 적을 수 있다.

노동생산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비재 형태를 취하든 생산수단 형태를 취하든 완전한 소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완전한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財產世襲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유는 소유자當代에 한해서만 완전하며 재산 세습은 1백% 相續稅에 의하여 봉쇄된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기회가 완전평등하므로 貧富差가 교육·養育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미치는 효과는 全無하거나 극소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부모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에 비하여 성장과정 및 성장후에도 수많은 有形無形의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1백% 상속세로 재산세습을 완전히 막더라도 출발점의 有·不利를 전폐할 수는 없다. 따라서 社會的 寄與의 대소에 따라 差等이 생길 수 있는 富는 당

대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生產手段形態를 취하는 人工資本(man-made capital) 일 경우는 더 엄격해야 한다.

(3) 調整機制

시장과 명령 두 調整機制는 이를 조화롭게 混用한다. 다만 어느 機制를 어떤 부문에 적용하느냐 하는 결정은 인간이 한다. 그 결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만을 제외한 모든 사회문제를 조화롭게 조정할 책임을 지는 非政府機關인 特別委員會에서 사회발전계획과 관련지어 내리도록 한다.

민간부문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위임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시장에 의한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면서도 조직이 용이치 않고 명령을 거부하는 부문은 정부가 시장을 용이한 간접 즉 價格支持制 또는 所得支持制와 같은 間接統制를 할 수 있다. 농업부문이나 특정한 예술부문등이 초기에는 이에 해당될 것이다.

시장이 실패한 부문 중 조직이 용이한 부문은 명령에 의하여 조정한다. 명령은 어떤 조직 차원에서 내리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權限委任은 앞서 말한 委員會에서 하는 것이 옳으나 앞 節에서 말한 共同體로 分權化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特別委員會는 수많은 共同體간의 명령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4) 成功指標

일찌기 J.M. Keynes도 「인간사회의 정치문제는 경제적 효율, 개인적 자유 및 분배정의란 3대 가치를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앞의 두 가지는 부르조아階級政黨 고유한 재산이고 나중것은 프롤레타리아계급정당의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고 분배정의를 외면한 자본주의는 利潤을 유일한 成功指標로 삼아왔다.

사회주의는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물질적 기반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利潤못지 않게도 이윤보다는 자유, 형평 등 인간적 가치를 성공지표로 중시한다. 단 자유, 형평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實測할 수 없고 또 생산이란 기반위에서 신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利潤과 더불어 고용도 성공지표로 삼는 것이 옳다.

완전고용을 성공지표로 삼는다고 할 때 소련, 동유럽은 물론 북한공산주의까지도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基本精神과 實質에 있어 사회주

의사회에서의 성공지표인 완전고용은 공산주의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고용이란 곧 노동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노동은 곧 자기실현 즉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고 人格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처럼 노동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인격을 완성시키는 과정임에 반하여 노예제사회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은 단지 生計手段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노동력의 판매이다. James Mill이 적절히 지적했듯 자본가와 노예소유자는 노동력구매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존재인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공중변소 마루바닥을 까는데 쓰이는 황금을 생산한다는 국가목적을 위하여 강제된 노동력지출이란 점에서 그 것은 사회주의적 자기실현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노예제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사회든 공산주의사회든 노동이 자기실현수단이었던 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렇기에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완전고용이 그 口號와는 달리 관료주의, 태만, 비효율등 人間性本然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결과만을 가져왔다. 한편 노동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는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에 대하여 일찌기 Smith는 「평생을 몇가지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 보내온 사람은……결코 일어날 일 없는 곤란을 제거할 방편을 강구하는데 있어 이해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 결과 그는 자연히 그 같은 노력을 하는 습성을 잊게 되어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맨밀 바닥수준까지 우둔해지고 무지해지며……합리적인 대화도 할 수 없고 너그럽고 고상하고 부드러운 정서도 지닐 수 없고 일상적인 사생활의 의무에 대한 정당한 판단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염려하면서 이런 조건하에서는 근로자가 市民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었다. 오늘날 New York부두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낱말이 2백개정도라는 사실은 Smith의 우려가 적중한 것, 자본주의노동이 지극히 非人間的인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심각한 노동력부족단계에 들어갔으므로 고용을 성공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고용은 量뿐 아니라 質이란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노동기회가 주어졌다는 것과 진정한 자기실현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 다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실현을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附加價值生產性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성공지표로 기능해야 한다.

4. 社會主義社會組織原理 (Ⅱ)

한 사회가 사회주의원리에 충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1) 分權的 參與原則

첫째 사소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은 放任해도 좋지만 중요성을 가진 사항에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일인가는 當者가 결정한다.

둘째 조직의 결정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은 그 조직에 참여해야 한다.

세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네째 소수의 專制는 다수결을 통하여 견제되어야 하지만 다수에 의한 결정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민주주의는 비단 다수 또는 소수의 전제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하에서 소수가 다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2) 정부의 경제적 기능

직접적 생산활동은 모두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수송, 항만 등 狹義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단 통신과 철도, 발전과 送·配電등 업무는 各國事情에 일임할 수 있다. 廣義의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수많은 기능도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 교육은 일정연한의 義務教育을 제외하고는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고 운영은 학원의 自治에 맡겨야 한다. 기술개발 역시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운영은 대학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맡겨야 하지만 어떤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가 하는 결정은 公共當局 예컨대 앞서 말한 특별위원회가 한다. 산업 및 생활폐기물 등 공해물질처리와 자연보호는 정부가 직접 책임진다. 產業災害방지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勞·使중 어느 한쪽이라도 재해방지시설을 요구하면 독립적인 전문기구諮問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정부가 신규설치 또는 改·補修해야 한다.

(3) 企業經營

기업경영은 현재의 자본가적 경영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또는 勞資공동 결정을 거쳐 완전한 노동자自主管理로 넘어가야 한다. 경영참가나 공동결정은 法보다는 소유에 근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유는 첫째 제도적으로 노동자에게 우선배정되는 주식受分(종업원特株), 둘째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기업주식, 세째 노동조합이 조합기금운용의 한가지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기업주식, 네째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株主로부터 위임받는 주식 등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다.

경영참여 또는 공동결정이 좀 더 초기에 성과를 거두려면 勞動측이 확보한 株式수에 비례하여 노동이 임원을 선출하거나 또는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法이 제정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無決議權株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처음에는 資本이 主가 되고 勞動이 從이 되는 경영참가에서 나중에는 勞·資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노동자가 소유하는 株式持分이 커져 전체 議決權株의 과반을 넘게 되면, 혹은 또 그 이전에라도 노동자와 그 연합세력이 확보한 주식이支配株主持分을 웃돌게 되면 노동자가 主가 되고 資本家가 從이 되는 공동결정 또는 노동자의 결정에 자본가가 경영참가를 한다는 새로운 경영형태가 생기게 된다. 이때는 기업경영원칙은 資本이 主이고 노동이 從이었던 경영참가형태 때와 다를 바 없어야 한다. 이 같은 경영참가단계 또는 특히 공동결정단계에 있어서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勞·資對立이 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언제든지 제3자격 개입·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식의 절대다수를 소유하게 되어 제3자의 도움없이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노동조합은 그持分을 일정한 배분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무상양도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때로는 利害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主體이기 때문에, 또 거의 완전한 勞動者支配가 실현되면 노동조합은 그 기능과 따라서 그 조직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취해져야 하는 조치이다. 노동자에 의한 결정은 유고슬라비아의 勞動者自主管理體制와 거의 동일하므로 그運用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유고슬라비아에서 借用해 보기로 한다.

첫째 조직을 민주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 ① 의사결정에 대한 참가는 직접적이어야 하고
- ②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는 透明해야 하며
- ③ 집단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정당하지 못한 다수지배는 배제되어야 하고
- ④ 意見造作은 없어야 한다.

둘째로 同一次元에 속하는 한 經濟主體의 결정이 다른 경제주체의 이익에
계속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그런 결정은 한 次元 높은 결정권자에게 위임되
어야 한다.

세째 결정에 참가한 개인과 조직도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네째 결정을 실행한다는 것 즉 그 執行과 管理는 전문가적 능력에 관한
사항이지 민주주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다섯째 위 原則은 활동이 다음과 같은 두 분야로 분할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익집단	대	전문집단
정책결정		전문적 노동과 관리업무
합법성근거를 정치에 둠		전문조직에 둠
가치판단		기술적 판단
1인 1표		능력에 따른 加重票

여섯째 정치적 결정과 기술적 결정은 명쾌히 구분되지 않는 수도 있으므로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한 보조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統制・紛爭解消機能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노동자자주관리제도가 유고슬라비아의 前轍을 밟지 않으려면 均衡・牽制
장치를 가져야 한다. 均衡・牽制장치로 우리는 자주관리기업의 최고결정기
구에 半數의 주민대표・이익대표・공익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생각할 수 있
다. 이들 외부대표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
업의 생산물가격 및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
격과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임금 및 社內留保를 결정하는데만 제한적
으로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4) 大資本과 獨寡占

자주관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大資本은 자연히 도태된다. 그러나 대자본

에 의한 複合經營이 미치는 나쁜 효과를 미리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主力企業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系列化하든지 水平의으로 계열화하든지 兩者擇一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系列化段階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獨寡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자에 의한 기업자주관리가 실현되고 기업의 최고결정기구에 주민대표뿐 아니라 이익대표, 공익대표가 반수가량 참가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獨寡占操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요구하는 경우 사회는 언제든지 독과점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사회에서 시장지배를 위하여 규모의 불경제를 무릅쓴 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다. 그 같은 독과점이 부당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가격과 생산량을恣意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는 최고결정기구의 반수를 점하는 주민 대표·이익대표·공익대표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므로 설혹 노동자대표가 전부 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기술적, 자연적 독점일 경우는 정부가 인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독과점 폐해에 대한 制御裝置가 内在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주의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는 독점기업을 정부가 인수·운영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술적, 자연적 독점일 경우는 그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예방이 충분치 못하였을 경우는 事後에 충분히 정계·배상케 하는 엄격한 규제조치마련이 더 효과적이고支配를 위한 독점은 가차없이 解體시키는 것이 옳다.

(5) 勞動所得

노동은 개인노동과 집단노동, 직접노동과 간접노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노동과 직접노동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속련도 등을 기준하여 보수가 주어져야 하고 집단노동과 간접노동은 인간관계, 노동조직, 창의성등을 기준하여 보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자자주관리체제에서는 개인소득은 임금 플러스 배분이윤으로 구성되고 노동소득은 개인소득에 留保利潤을 합한 것이다.

노동소득은 지금의 差等賃金에서 앞으로는 平等賃金으로 변화해야 한다. 차등임금을 지금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임금은 기본수요, 생산성, 위험 및 嫌惡負擔度를 기준

하여 각기 기본급, 장려급, 補償給의 세가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고 각 구성요소에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전체임금을 결정한다.

기본급은 家口구성원수를 기준하며 장려급은 교육연한·자격유무등을 기준하며 위험·혐오부담도는 노동력수급관계로 나타나는 노동의 限界非效用을 기준한다. 가령 이들 세가지 구성요소에 동일한加重值를 준다면 평균적인 교육을 받고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작업을 하지 않는 독신노동자는 1단위 보수를 받고 최고교육을 받고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작업을 하는 독신노동자는 3단위보수를 받으므로 임금격차는 1대 3의 범위안에 제한된다. 이들 세가지 요인에 대한 社會的評價는 나라마다, 또 발전단계에 따라 같지 않으므로加重值도 자연히 같지 않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본수요를 기준할 때 학력 등으로 대표되는 생산력이 1이 아니라 예컨대 3이고 위험 및 혐오부담도가 0.5라고 합의된다면 그것이 곧 임금결정척도가 되어 앞서의 경우는 1대 3이 아니라 1대 4.5가 될 것이다.

이같은 임금격차는 사회주의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작아질 것이 분명하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짐에 따라同一勞動에 종사하는 사람사이에는 학력등으로 인한 생산력격차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둘째 기술이 진보되고 이윤이 배타적 성공지표로 가능하지 않게 되면 위험한 일이나 혐오스러운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또 연대감이 커져감에 따라 평등하게 부담될 것이다. 그 결과 임금은 청년, 중년, 노령등 연령을 기준하여, 즉 부양가구수와 체력, 숙련 등 요인을 반영하여 逆U字型이 될뿐 同一年金, 同一勞動에 대하여서는 절대적으로 평등한 임금이 성립될 것이다.

끝으로 J.A. Schumpeter가 말하는 企業家機能이나 그 한가지 구성요소인 발명은 動態利潤 즉 純剩餘를 창출하므로 그 일정비율이 기업가보수 또는 특허사용료로서 동태이윤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순수한 개인적 발명이 아니라 민간기업연구소등에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용부담아래 과학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이룩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당개인 또는 팀에 대하여 개인적 발명인 경우와 동일한 비율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며 급여를 비롯하여 연구개발에 투입되었던 모든 直·間接費用은 적절한 이자를 가산하여 기업에서 상환받아야 한다. 다만 이경우 기업에 대한 비용상 작은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

큼 커야 할 것이다.

(6) 消 費

소비는 개인소비와 집단소비로 二元化된다. 집단소비는 의료, 교육, 出產育兒, 주택 등 外配性이 있는 財·서비스소비를 말하며 개인소비는 의부성이 없거나 아주 적은 재·서비스소비를 말한다.

개인소비는 개인소득에서 支拂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초기 단계까지는 개인소득에 차등이 있을 것이므로 개인소비에는 노동에 따른 분배원리가 적용되나 사회주의 완성 단계에는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소비는 사회주의 사회가 성립하기 이전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집단소비는 수요가 발생하면 개인적 지불 능력과는 관계없이 정부책임 아래 1백% 총족될 수 있도록 대처되어야 한다.

한편 소비내용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사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소비재가 생산될 것인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일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의 지배가 종식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불평등분배를 반영하여 시장은 群衆支配(mob rule)市場과 金權支配(plutocracy)市場으로 분극화되게 된다. 즉 한쪽 극단에는 구매력이 작기 때문에 품질을 고려할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무수한 군중의 작은 수요가 집합하여 유효수요를 창조함으로써 성립되는 劣惡한 規格商品市場이 있고 다른 한쪽 극단에는 수요량은 적지만 아무리 비싼 단위생산비용이라도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수요를 토대로 성립되는 超高級品市場이 있어 多樣性은 절차 상실되어 간다. 이 같은 소비의 군중지배와 금권지배란 兩極端에서의 劃一化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한 課題가 된다.

평등이 실현되어감에 따라 금권지배와 군중지배는 사라질 것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또 다른 두 가지 소비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財貨에는 방어재(defensive products)와 창조재(creative products) 두 가지가 있으니 前者は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할 때 신체적 고통이 일어나는 재화이고 後者は 그런 일은 없지만 그 소비를 통하여 적극적인 기쁨 또는 만족을 얻게 되는 재화이다. 이들 두 법주의 재화소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무시되어 왔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는 이 문제는 소비와 관련된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5. 手段의 선택

일찌기 Keir Hardie는 위대한 원리가 독단적 해석에 의해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을 걱정하였다. 독단적 해석은 잘못된 실천수단을 택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원리 그 자체를 봉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데 있어 그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교 육

사회주의를 실현・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다. 이는 배움을 통하여 人性이 陶冶된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된 선택이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성취는 인간행위의 산물이다. 물론 인간행위는 자연에 의해 크게 제약받지만 기술혁신과 제도개혁등 인간노력을 통하여 그 제약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벗어날 수 있다. 이같이 생각될 때 인간적 성취를 저해하는 최대장애요인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 그 자신이다.

인간은 한때 자연을 파괴・변형함으로써 인간에게 좀 더 봉사케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자연과 共存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變造하는 기술을 주로 개발함으로써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자연파괴를 결과하였다. 또 제도면에서도 공산주의나 폐시즘같은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자연・기술간의 調和를 창조하는데도 실패한 일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人間性本然, 自然의 理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생겨났던 것이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확충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고 그 사회를 짚어지고 나갈 인간, 즉 사회주의擔持勢力인 愛他的 人間을 만들고자 한다. 교육은 동시에 물질적인 면에서도 생산력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므로 모든 사람이 보다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公正分配

불평등이 의미있는 규모로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사회주의사회일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은 되도록 빨리 이를 해소하고 정당한 불평등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도 사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등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생산물분배에 대한 보다 평등한 참여는 교육을 통한 생산력 향상·평준화로 보수차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수단이외에도 한편으로는 最低賃金法制化 및 그 끊임없는 수준인상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확대를 통한 團體交涉力 강화에 의하여 계속 추진된다. 둘째 생산수단소유에 대한 평등한 참여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자연자본의 公有 확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人工資本에 대한 持分증대를 주요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국유화는 거부한다. 세째 생산활동기회에 대한 평등한 참여는 한편으로는 自由企業原理를 존중하고 확립시킴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이윤과 더불어 2大成功指標로까지 중요시되는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실현시켜가야 한다. 네째 생산적 결정에 관한 평등한 참여 역시 두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진된다. 하나는 영국식 二元的參與 또는 프랑스식 三元的參與 등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下意上達式產業民主主義를 활용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경영참가 또는 공동결정을 확대하는 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최종목표로는 持分을 통한 공동결정이라는 유고슬라비아식 자주관리가 바람직스러우므로 持分分散을 저해하는 관습적 제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에 관한 평등한 참여인데 이는 이節 1에서 상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여섯째 폐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평등한 참여가 있다. 사회주의는 자연과 인간이 균형있고 조화롭게 共存하는 것을 물질적 가치생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이윤을 위하여 자연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便宜權(amenity right)은 절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3) 경제성장

경제성장은 사회주의실현을 위하여 특히 두가지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첫째 생산은 인간소유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고 따라서 생산증대는 인간을 물질적 궁핍의 노예에서, 또 그로 인하여 개체된 다른 인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사회주의는 물질을 目的價値로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수단가치로서의 그 중요성은 결코 등한시하지 않는다. 둘째로 경제성장은 때로는 사회주의의 유일한 이상인 것처럼 과대평가되고 있는 평등을 실현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利己心이 愛他心을 암도하는 靜態社會에서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폭력혁명뿐이

다. 그러나 힘의 態意的行使를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폭력이 평등뿐 아니라 기타 모든 가치를 실현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유와 인류애란 또 다른 가치에 어긋남으로 해서 거부한다. 폭력에 의하지 않고 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경제성장 그것도 생활필수품 및 생활편리품이 풍부하게 보급될 단계까지는 가급적 빠른 경제성장뿐이다. 그것은 과거 所得의 축적인 富의 분배구조변화에는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새로이 창조되는 富인 소득의 분배비율을 바꾸는데는 비교적 순응적이라는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처방이다.

(4) 經濟民主主義

사회주의를 실현·유지시켜주는 또 한가지 조건이 경제민주주의이다. 경제민주주의는 경제권력을 완전히 균등분배되는 것만을 목적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평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한 사회적 공헌의 대가로 갖게 되는 힘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경제권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態意的行使를 유효하게 制御하고 경제권력이 그 소유자에게 가져다주는 과실분배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경제민주주의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의 지배력이 劣位에 서게 될 때 처음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人工資本私有는 원칙적으로 무제한 인정하고 또 공산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잔재를 하루아침에 폭력적으로 제거하려 하지 않고 인간적,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없애고자 하므로 富와 소득의 불평등은 의미있는 규모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참여방식을 통하여, 또 자유, 평등, 인류애라는 사회주의의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이 마련되는 競技規則, 社會主義的行為準則에 의하여 힘의 態意的行使는 완전히 규제되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경제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5) 經濟的 保障

경제적 보장 또한 중요한 수단이다.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 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사회주의가 평등을 모든 차원에서 실현시켜 주고자 노력하고는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언제나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어서

事前的 機會均等만으로는 평등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선천적인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 후천적인 瘦疾者, 노인, 고아라든지 산업·경제가 갖는 구조변동이나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劣位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곧 그것이다. 이러한 劣位는 대부분 자신에게 归責시킬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사회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설혹 자신에게 归責事由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자의 인간적 불행으로 그 과실을 보상케 하지는 않는다. 이는 인류애라는 사회주의이상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을 사회주의라고 해서 이를 모두 未然에 방지할 수는 없다. 다만 事前對備에 萬全을 기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事後匡正이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IV. 결 어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간결한 소망이 사회주의운동이란 명칭과 형태로 구체화된지도 2백년이 넘었다. 그동안 內實로나 外樣으로나 사회주의자에 의한 성취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길은 아직도 멀고 협난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이 資本과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자선과의 투쟁, 시간과의 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람은 제자신을 모욕한 다음에 남에게 모욕당한다」(人自侮後人侮)란 말도 있지만 通念을 거부하고 既成의 가치에 반대했던 사람 중 자기 信念에 투철하지 못했던 사람은 언제나 외부압력에 굴복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투쟁이 힘겨울수록 더욱 더 그 신념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한편 시간은 어느 의미에서는 분명 사회주의운동을 돋고 있다. 사회주의 이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전인류의 신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가치가 지배했던 1만년의 상처를 고치고 사회주의 사회를 완성하는데 또 다른 1만년이 필요하다면 그같은 사회주의는 존재할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간성본연에 어긋나는 현상은 그것이 가진 자의 歪曲된 인간성이든 없는 자의 곤궁으로 인한 고통이든 그 是正을 시간에 맡긴다는 것은 사회주의기본이념인 인류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